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55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9,34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로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6

나. 원고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2.경 소외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D 대 1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은 2018. 5.경 철거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13. 당회를 열어 이 사건 토지에 기도소를 마련하여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7.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면적 25㎡ 정도의 천막(이하 '이 사건 기도소'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18. 5. 23.경부터 이 사건 기도소에서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열었다.

라. 피고는 2018. 9. 11.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8,201,600원, 지방교육세 1,145,240원, 합계 9,346,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 기도소는 2018. 12. 하순경 철거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서 2019. 1.경부터 교회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기도소를 설치하고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6

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계속적 · 반복적 사용 여부나 건물 · 시설의 존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7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4339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6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위 토지가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18. 5. 13.자 당회록(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E는 당회 개최를 선언한 후 '2018. 6. 1.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피고의 담당 직원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사건 토지에 기도소를 마련하여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드리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5. 20.경부터 이 사건 기도소에서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당회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도소의 설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새로운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인데, 2018. 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 건물이 철거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2019. 1.경 교회 건물의 신축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취득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면적 1943㎡인 이 사건 토지에 면적 25㎡ 정도의 천막인 이 사건 기도소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기도소는 상시적으로 고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이 아니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6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시설물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이 사건 기도소의 크기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도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원고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 6. 1.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대구 달서구 F 소재 교회 건물에서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신도들에게 차량 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기도소에서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서 교회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될 무렵 이 사건 기도소를 철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도소를 상시적, 연속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종교단체에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보편적 문화인 종교 등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나대지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교회 건물 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천막을 설치하고 일부 종교 행사를 진행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종교단체에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취지를 일탈하여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6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정신구

판사 공두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6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